

# 해명자료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제공일자 2020. 4. 2.

총 2면

www.nec.go.kr

공보과 02)503-2791  
02)507-2758

## “선관위가 편파적이다” 라는 일부 주장에 대한 입장

= 선거 중립은 선관위 최고의 가치 =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한국선거방송

olleh tv  
273번

t-broad  
205번

최근 언론 등에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편파적이다”라는 일부 주장과 관련하여

### 1. 일부 단체 회원들의 미래통합당 후보 유세 방해 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대처

-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하여 일부 단체 회원들이 유세를 방해하는 행위가 잇따르는데도 선관위가 팔짱만 끼고 있다, 선관위는 공문 한 장 보낸 것 외에 손을 놓고 있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선관위는 일부 단체가 특정 후보자의 성명이 유추되는 피켓을 들고 지하철역 등에서 1인 시위를 한 사실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으로 해당 단체에 중지 요구(20. 3. 18.) 공문을 발송하고 수사기관에 제지·중단을 요청하였으며,
- 이후 동 단체 소속 회원들이 지하철 역 앞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장을 둘러싸고 소리를 지르며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의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어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로 해당 단체 회원과 단체를 수사기관에 고발(20. 3. 30.) 조치하였음.

## 2. '비례○○당' 명칭 허용여부 결정 관련 내용은 선관위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

- 정당의 '비례○○당' 명칭의 사용 등을 불허한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하여, “사무처의 의견은 정당의 당명을 폭넓게 허용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불가로 뒤집혔다”라는 주장은 선관위의 의사결정구조와 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에 근거한 것임.
- 선관위는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사무처에서 판례·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전체 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임.
- 따라서, 사무처의 의견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선관위의 의사임.

선거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비판은 이를 받아들이고 개선되어야 하나, 객관적인 근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선거관리기관의 공정성·중립성을 의심하거나, 특히 '총선 불복' 등을 거론하는 것은 올바른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국가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